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위탁 및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0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0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19.
- (3) 회 부 일 : 2026. 3.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장애인 가족이 겪는 인권침해·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구제 체계가 미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법적 토대도 불충분하여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위탁·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취소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30조의2).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함(안 제30조의3).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30조의4).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세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운송요금 할인 등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 가족’ 정의

- 개정안은 ‘장애인가족’을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주거·생계를 같이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장애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u> ”

- 개정안은 현행법에 ‘장애인 가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된 조문에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일반적으로 정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구체화하여 해석과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법률상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의 요건으로 「민법」 제779조¹⁾에 따른 가족을 전제로 하면서 다시 장애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실질적으로 부양·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법」 제7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의 경우, 이미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의 “생계를 같이하며”라는 문언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실제 적용에서는 「민법」상 가족 여부보다는 생활공동체성 및 부양·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 부양·양육” 및 “보호의 책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가족’의 문언과 판단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의 내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1)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와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58조 및 제8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 ----- ----- -----.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1.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 가족 권리 옹호 및 위기 가정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방문 돌봄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심리상담(동료상담) 및 휴식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6.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7.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8.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9.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사

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민간 전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위탁을-----.

1. -----
----위탁을-----
2. 제6항에-----위탁-----

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략) ④ <u>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u>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u>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u> <u>의 지정 취소</u> 2. ~ 5. (생략)	----- 3. (현행과 같음) ⑥ <u>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u> <u>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u> <u>위탁 기준·절차 등</u>----- -----.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u>가족지원센터</u> 6. <u>(현행 제5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청문) ----- ----- ----- -. 1. <u>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가족지원</u> <u>센터 위탁 취소</u> 2. ~ 5.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을 보완하
는 한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명칭을 ‘장애인가족지
원센터’로 변경하고,²⁾ 장애유형을 고려한 설치·운영 의무와 위탁
운영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분
명히 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2) 현재 법률상 명칭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지만 해당 기관들의 실제 운영상 명칭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임.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간 지원 편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6년 4월 기준,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전국 1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돌봄 지원, 휴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³⁾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고 지방고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
-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26개소에 64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경상남도는 21개소에 27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1: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로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장애인 가족 권리 옹호 및 위기 가정 지원’, ‘장애인 가족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추가하고 있음.

다만,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의 경우는 현행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관련 내용을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3) 2020년 98개소 → 2023년 115개소 → 2026년 125개소(보건복지부 제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업 실태
조사의 경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
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은

현행법상 휴식 지원, 사례관리 지원, 역량강화 지원 시책과 상당
부분 중첩되거나 이를 보다 세분화한 성격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사항을 법률에 개별적으로 추가하여 열거하는 것이 필요한
지, 아니면 현행 규정의 범위 내 사업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개정안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권리 옹호 및 위기 가정 지원 3. 장애인 가족 방문 돌봄지원 4. 장애인 가족 심리상담(동료상담) 및 휴식지원 5. 장애인 가족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 지원 6.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7.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8.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9.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제도적 위치와 법적 성격을 분리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지원 기준을 활용하지만, ‘사회복지시설’로는 보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전달체계 안에 위치시켜 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산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규정 중 어떠한 사항이 적용되고, 어떠한 사항이 배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법 체계상 별도의 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장애인가족에 대한 수당, 국민연금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제도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 가족에게 장애인가족 수당을 지원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및 운임 감면·할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3(장애인가족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을 지원·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경제활동 축소·중단·포기에 따른 소득 수준의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가족 2.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가족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30조의4(장애인 가족의 국민연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의 돌봄을 위하여

<신 설>

생계를 같이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거나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경제적 부담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을 지원·조력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의 운임 등을 감면·할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 가족에 대해 장애인가족수당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시설이용료·운임 등의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책임에 수반되는 현실적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83.4만원보다 177.6만원 낮았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원으로 나타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의료비, 보호·간병비, 교통비, 보조기기 구입 등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⁴⁾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지원·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경제활동 축소·중단·포기에 따른 소득 수준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가족,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⁵⁾,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장애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⁶⁾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장애인가족수당의 지급 대상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개정안이 장애인 가족의 추가 비용 부담과 소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현행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수 있어 보편성 측면에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추가 수당의 경우는 가족 중 장애인의 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장애 정도, 돌봄의 상시성·집중도, 가족의 소득 및 경제활동 제약 정도 등 실질적인 부담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원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가족수당이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족의 실제 돌봄 부담과 소득 감소 등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추가 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의 돌봄을 위하여 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거나 가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앞서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장애인 가족의 국민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시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의 돌봄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며”라고 규정한 부분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의 경우는 「국민연금법」 체계 안에서 직접 규율되고 있는 사항으로,

군 복무 기간, 출산 및 실업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산입,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모두 「국민연금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재원이나 지원 근거를 함께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근거 규정과 함께 「국민연금법」의 관련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고용보험법」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7)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지원 내용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셋째,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운임 감면·할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운임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법 제30조의 개정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현행법	개정안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u>장애인</u>과 <u>장애인을</u> 부양하는 <u>자</u>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	제30조의5(경제적 부담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그 밖에 <u>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u>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을 지원·조력하</u>

「국민연금법」

부 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의 운임 등을 감면·할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 시 수반되는 예산(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8) 개정안의 취지는 지원 대상을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서 ‘장애인 가족’으로 보다 명확히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됨.

〈참고자료 1: 장애인 가족 지원 수행기관 현황〉

2026.4. 기준

시도	개소 수	지자체 지원 (백만원)	지자체 지원 이외 예산* (백만원)
계	125	28,598	3,428
서울	26	6,499	869
부산	1	252	42
대구	1	285	75
인천	2	406	5
광주	1	267	10
대전	2	537	23
울산	1	126	-
세종	1	354	86
경기	24	7,283	1,539
강원	4	575	214
충북	8	2,203	110
충남	11	2,713	223
전북	3	658	7
전남	4	913	81
경북	13	2,318	104
경남	21	2,772	40
제주	2	437	-

주1): 지자체 지원 이외 예산은 후원금, 사업수입 등을 포함한 예산임.

자료: 보건복지부